

서 사용하여야 할 서울특별시 공유재산을 무상대부 사용하고자 서울특별시의회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에 무상대부 하고자 하는 재산)

○ 본관건물 및 부대시설

- 위 치 : 서울특별시 중구 예장동 4-6
- 연면적 : 353.43m²(지상2층)
- 토 지 : 537.20m²

○ 별관건물 및 부대시설

- 위 치 : 서울특별시 중구 예장동 산4-5
- 연면적 : 264m²(지상 6층 건물 중 5층 일부)

○ 사용기간 : '04. 3. 15 ~ '04. 7. 14(3년간)

3. 전문위원 겸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윤병국)

○ 본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재정 출연기관인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에서 사무실로 사용하여야 할 서울특별시 공유재산(중구 예장동 4-6외 1)을 무상대부 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 제82조제2항, 제83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88조 제2항 제6호 규정에 의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얻으려고 제안된 것임.

○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은 문화, 예술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고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키우고자 “서울특별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설립된 서울특별시 재정출연 공익법인으로서

현재 사용중인 서울특별시 중구 예장동 4-6외 1에 위치한 서울특별시 공유재산을 무상대부 사용할 수 있도록 동의해줌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이 2004. 3. 15에 설립되어 현재 위치의 공유재산을 사무실로 사용해온 지가 5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의회에 사후 동의를 요구하고 있음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의회의 사전 동의절차를 염도록 한 규정을 어기고 있어 향후 유사한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효지 : 없음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구성하지 않았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운영에 따른 서울특별시공유재산무상대부사용동의안

서울특별시 재정 출연기관인『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운영과 관련하여 서울문화재단이 사용하고 있는 우리 시 공유재산을 무상대부 사용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제82조제2항, 제83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88조제2항제6호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의결한다.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의 무상대부 사용대상 재산(목록 : 별첨)

1) 서울문화재단 본관

○ 건물 및 부대시설

- 위 치 : 서울특별시 중구 예장동 4-6
- 연면적 : 353.43m²(지상2층)

○ 토 지 : 537.20m²

2) 서울문화재단 별관

○ 건물 및 부대시설

- 위치 : 서울특별시 중구 예장동 산4-5
- 연면적 : 264m²(지상6층건물 중 5층 일부)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무상대부 사용 재산목록

| 연번 | 물건지 | 지목 | 면적(m ²) | 재산가액(천원) | 비고 |
|----|--------------|----|------------------------|-----------|--------|
| | 서울문화재단 본관 | | 건물 353.43 토지 537.20 | 1,264,000 | |
| 1 | 중구 예장동 4-6 | 건물 | 353.43 | 45,000 | 부대시설포함 |
| 2 | 중구 예장동 4-6 | 대지 | 537.20 | 1,219,000 | |
| | 서울문화재단 별관 | | 건물 264 | 66,000 | 부대시설포함 |
| 1 | 중구 예장동 산 4-5 | 건물 | 264 | 66,000 | |
| 합계 | | | 건물 617.43 토지 537.20 | 1,330,000 | |

난지환경대중골프장 협약해지와 시민가족공원 추진에 관한 청원 심사보고서

| | |
|------|----|
| 의안번호 | 77 |
|------|----|

2004. 9. 7
환경수자원위원회

1. 심사 경과

- 가. 청원인 : 여진구(서울시 은평구 진관외동 175-591)외 19인
- 나. 소개의원 : 정홍식 의원
- 다. 접수일자 : 2004년 7월 26일
- 라. 회부일자 : 2004년 8월 3일
- 마. 상정일자 : 2004년 9월 7일(제151회 임시회 제2차 환경수자원위원회)상정 · 의결

2. 청원 요지

- 월드컵공원내 노을공원에 2001. 7. 20. 서울특별시와 서울올림픽 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체결한 “난지도 노을공원 조성운영에 관한 협약”을 해지하고 시민가족공원으로 환원 할 것을 촉구하며, 서울특별시가 공단에 대하여 변상금 부과, 고발조치 등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을 청원함.

3. 취지설명 요지 (정홍식 의원)

- 동 청원은 난지도 노을공원 조성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협약대상자인 서울올림픽 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이 현재 공사가 완료준공된 시민공원 및 환경대중골프장 협약의 목적인 공익성 확보와 생태친화적 여건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는 협약 불이행으로 시민이용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 서울올림픽 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체결한 “난지도 노을공원 조성 · 운영에 관한 협약” 해지와 시민가족공원으로 추진 및 변상금 부과 · 고발 등을 요청하는 것임.

4. 전문위원 겸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 김종식)

- 동 청원은 환경수자원위원회소속 정홍식의원님의 소개로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관외동 175-591 여진구외 19인으로부터 접수되어 접수번호 제77호로 2004. 8. 3.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청원의 요지는 폐기물매립지인 난지도 105만평에 대중 골프장을 건설하여 시민들이 저렴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고 골프의 대중화, 골프 꿈나무 육성에 기여하고자 2001. 7. 20. 서울특별시와 서울올림픽 기념 체육진흥공단이 협약을 맺어 공단이 골프장을 건설하고 이를 시에 기부채납한 후 공단에서 운영관리할 계획이었으나 공단은 현재 공사가